##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9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 강기윤·성일종·윤영석

구자근 • 이종성 • 태영호

엄태영 · 김석기 · 박덕흠

박완수 · 김도읍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차장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은 없어 시설물의 퇴색, 노후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령 및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보조 또	는 융자)	1.2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
			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대통령
			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